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73

발의연월일: 2025. 1. 9.

발 의 자: 김종민 · 이수진 · 복기왕

안도걸 • 박희승 • 이재관

어기구 • 위성곤 • 박수현

임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탁·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,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,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,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,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는 수탁·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, 수탁·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위탁기업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수탁·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의 사업제안 또는 교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 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5항 신설). 법률 제 호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제12호·제13호·제13호의2 및 제2항은 수탁·위탁거래의 제안 또는 계약 체결의 준비·교섭 등 수탁·위탁거래 계약 체결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이 경우 "위탁기업"은 "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"로, "수탁기업"은 "위탁을 받으려는 자"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준수사항) ① ~ ④ (생	제25조(준수사항) ① ~ ④ (현행
략)	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⑤ 제1항제12호·제13호·제13
	호의2 및 제2항은 수탁・위탁
	거래의 제안 또는 계약 체결의
	준비·교섭 등 수탁·위탁거래
	계약 체결 이전의 행위에 대하
	여도 적용한다. 이 경우 "위탁
	기업"은 "위탁을 하고자 하는
	<u>자"로, "수탁기업"은 "위탁을</u>
	받으려는 자"로 본다.